

공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

제2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제2차 본회의(2023.1.18.)

#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



**산업건설위원회**

# 목 차

- 1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..... 1
-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..... 5

#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. 2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1. 4.

다. 상정일자 : 제26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(1. 12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)

-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산림복지 전문가의 활용) 및 제21조(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)에 따라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2023년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

나. 위치 : 향노화힐링랜드 일원(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)

다. 사업비 : 92,666천원(국 46,333 도 32,433 군 13,900)

라. 사업량 : 숲해설가 1명, 산림치유지도사 2명

#### 마. 시설현황

- 자연휴양림 : Y자형 출렁다리, 자생식물원, 숲속놀이터 등
- 치유의 숲 : 무장애숲길, 산림치유센터, 숲체험장, 명상숲길 등

#### 바. 위탁대상 사무 : 산림서비스(숲해설·산림치유) 기획·운영

- 산림서비스(대면 및 비대면 병행)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
-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
- 프로그램 운영, 설문조사(피드백)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

사. 위탁기간 : 2023. 4. ~ 12.(예산범위내) ※ 국·도비 예산확보 사업

#### 아. 향후계획

- 사업계획 수립(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)
- 사업자 선정(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·선정)
- 협약체결 → 사업수행 및 평가

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) 및 제21조(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)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산림교육전문가) 및 제20조(지원)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(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)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4(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)
- 「치유의 숲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산림청훈령)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

- 「거창군 거창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」 제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7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동의안은 향노화 힐링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임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에 따르면 “민간위탁”이란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
- 같은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따르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가 되는바 숲해설 및 산림치유사의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
- 또한, 제4조제3항중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계약일 경우 위탁 만료일 60일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
- 본 동의안의 경우 재계약이라기 보다는 매년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로 매년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고 있음
- 본 동의안의 경우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 
민간위탁 동의안  
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1. 2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2. 1. 4.

다. 상정일자 : 제26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(1. 12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복농촌과장)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삼봉산 권역 운영위원회 등 4곳에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시설명 :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

나. 위탁대상 사무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위탁 운영 관리

다. 위탁시설 현황(4개 지구)

위탁 지구	위탁 기간(5년)	위탁기관	위 치	위탁 시설물(면적)
삼봉산 권역단위	2018.3.14. ~ 2023.3.13.	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(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)	- 고제면 봉계리 85-1 - 고제면 봉계리 89	- 다목적센터 559.76㎡ 1동 (사무실, 북카페, 체험실, 식당/회의실, 체험객실) - 사과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 1식
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4.6. ~ 2023.4.5.	(사)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	-신원면 괴정2길 50	- 사랑누리센터 453㎡ 1동(사무실, 헬스장, 이동센터 등) - 스포츠시설 1식, 공용주차장 1식, 어린이놀이터 1식 등
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4.30. ~ 2023.4.29.	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	- 남상면 무촌리 656	- 다목적센터 980.03㎡ 1동(사무실, 헬스장, 대회의실 등) - 체육공원 1식, 공용주차장 1식, 어린이놀이터 1식 등
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18.5.30. ~ 2023.5.29.	가조권역 운영위원회	-가조면 마상리 316-25	- 커뮤니티센터 204.0㎡ 1동(사무실, 회의실) - 생태주차장(2,740㎡ 95대)

라. 운영계획

- 위탁기관 : 4곳(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, (사) 신원면 생활체육협회, 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, 가조권역운영위원회)

○ 위탁내용

위탁 지구	위탁 기간(3년)	위탁기관	위탁업무	위탁비용
삼봉산 권역단위	2023.3. ~ (3년간)	삼봉산권역 운영위원회 (베짱이사랑방영농 조합법인)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상 위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신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23.4. ~ (3년간)	(사) 신 원 면 생활체육협의회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상 위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남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23.4. ~ (3년간)	남상면 어울림마을 운영위원회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상 위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가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	2023.5. ~ (3년간)	가조권역 운영위원회	.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 .시설물의 유지관리	. 무상 위탁 ※ 운영 수입금 유지관리비로 사용

※ 갱신기간 3년

마. 향후일정

- 위탁지구 위·수탁 계약 체결 : 2023년 2월부터 순차적 체결
- 해당지구 위탁운영 : 2023년 3월부터 순차적 운영

## 4. 참고사항

가. 위탁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(행정재산 관리위탁)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
- 「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·운영 조례」 제3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8조, 제27조
- 「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」 제10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재계약을 위해 군의회에 60일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재계약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(행정재산 관리 위탁)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제5항 단서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과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될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의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
- 「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·운영조례」 제3조(시설물의 관리·운영)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은 직접 관리 및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기간은 5년이내이며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제3항의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할때마다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
- 따라서 본 동의안의 경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